「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」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① 법 제2조제2호에서 “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”란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.	제3조(정의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제2조제3호의2 및 제2조제4호의2---------- --------.
② 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프로젝트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“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「지식재산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(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한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“지식재산권“이라 한다)의 매입을 말한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인정하는 사업”이란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제5조(벤처투자조합의 출자) ① (생 략)	제5조(벤처투자조합의 출자 및 배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벤처투자조합은 영 제34조제1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동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의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투자비율을 달성하고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의무를 달성한 경우에 배분할 수 있다.	--- 얻어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<단서 삭제>
1.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한 후 회수된 출자원금. 이 경우 "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"는 "벤처투자조합"으로 본다.	<삭 제>
2.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방법으로 투자한 후 회수된 출자원금	<삭 제>
3. 조합 등록 후 3년이 지나고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투자하지 않은 출자원금	<삭 제>
제6조(조합원의 지위변동) ① (생략)	제6조(조합원의 지위변동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후 조합원의 지분양도 이외의 사유로 새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로 유한책임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출자금 총액을 증액하여 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. <단서 신설>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다만, 출자금이 투자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 총지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 새로 유한책임조합원을 추가할 수 있다.
제7조(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) ① 법 제51조제4항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“이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을 제외한 증권시장(이하 “증권시장“이라 한다)을 말한다.	제7조(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 시장”이란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행위제한) ①·② (생 략)	제9조(행위제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영 제36조제8호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	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1. (생 략) <신 설>	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가.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.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.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.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

<신 설>	3.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행위
<신 설>	4.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운용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조합이 얻어야 할 이익을 제3자가 얻도록 하는 행위
2. (생 략)	5. (현행 제2호와 같음)
제10조(행위제한의 예외) ① 영 제37조제1호나목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”란 벤처투자조합의 해산을 위해 유가증권 등 현금화되지 못한 조합자산을 업무집행조합원이 매입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.	제10조(행위제한의 예외) ① 영 제37조제2호나목----------. ② 영 제37조제3호----------.
② 영 제37조제2호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	
1. 2개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개발 또는 제작에 참여하고	1. ----------

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70퍼센트 이상인 사업	---------- ---------- -- 60퍼센트 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영 제37조제3호에서 “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출자금 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제7조제2항제2호다목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	③ 영 제37조제4호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12조(수익처분) 영 제40조제1항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.	제12조(수익처분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전사적자원관리(ERP)의 도입 및 운영비용	4. ----------(기업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)---
5. ~ 8. (생 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제14조(등록취소 절차) ① (생략)	제14조(등록취소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

	집행조합원이 법 제6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 처분에 앞서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.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	④ ---------- 제3항 ----------.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이 중대하거나 투자자 및 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.	⑤ ---------- 제3항---------- 제4항----------.
제15조(행정처분의 세부기준) (생략)	제15조(행정처분의 세부기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3과 같다.

제17조(위원회 구성) ① 제16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17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	2. ---------- 따른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 중 --------
3.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장이 지명한 자	3.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임직원 중 ---
4.·5. (생 략)	4.·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18조(위원회 운영) ① (생 략)	제18조(위원회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3인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	② ---------- 제4호 및 제5호----- 3인 ----------.
③ 위원회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	③ ---------- 의결

하되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	한다. ----------.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⑧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⑧ ~ ⑩ (생 략)	⑨ ~ ⑪ (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)
제19조(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처리) ① 벤처투자조합,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제19조(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처리) ① ----------.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.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	제22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
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.	② ---------- 영 제48조제4항----------. ----------
1. 영 제4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접수결과 :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4개월	1. 영 제48조제4항제4호----------
2. 영 제48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영상황 등에 관한 보고결과 : 익월 15일	2. 영 제48조제4항제8호----------
제23조(준용기준) (생 략)	제23조(준용기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회계처리는 「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및 조합규약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"은 "초기창업기업"으로 본다.
제26조(재무상태표의 표시) ①·② (생 략)	제26조(재무상태표의 표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재무상태표는 별지 제2호 서	③ ---------- 별지 제3호 --

식에 따른다.	--------.
제27조(손익계산서의 표시) ① ~ ③ (생 략)	제27조(손익계산서의 표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손익계산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.	④ ---------- 별지 제4호 ---------.
제28조(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의 표시)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각각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.	제28조(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의 표시) ---------- --------- 별지 제5호 ---------- 별지 제6호 ----------.
제29조(규제의 재검토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1월 10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제29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다음 각 호의 기준일---------- ---------- 기준일과 같은 날 전---------- ----------.
1. 제4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유한회사 요건	1. ---------- ---------- 요건 : 2020년 11월 10일
<신 설>	2. 제9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행위제한 : 2023년 4월 13일
2. 제1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	3. ---------- 세부기준 : 2020년 11월 10일

3. 제21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<신 설>	4. ---------- ---------- 요건 : 2020년 11월 10일 **부칙** **제1조(시행일)**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**제2조(벤처투자조합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)** ①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투자기업과 체결한 투자계약부터 적용한다. ③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
[별표 2] 행정처분 세부기준(제15조 관련) **1. 일반기준** 가·나. (생 략)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. <단서 신설> 라·마. (생 략) **2. 개별기준**	**[별표 2] 행정처분 세부기준(제15조 관련)** **1. ------** 가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. 다만,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 라·마. (현행과 같음) **2. 개별기준**

가. 벤처투자조합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4.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	법 제62조제1항제4호			
가. ~ 라. (생략)	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	등록취소
<신설>				
마. ~ 파. (생략)		(생략)		

가. 벤처투자조합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4.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	법 제62조제1항제4호			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	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	등록취소
마.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	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	등록취소
바. ~ 하. (현행 마목부터 파목까지와 같음)		(현행과 같음)		

나.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3.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	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			
가. ~ 라. (생략)		(생략)		
<신설>				
마. ~ 파. (생략)		(생		

나.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3.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	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			
가. ~ 라. (생략)		(현행과 같음)		
마.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	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
바. ~ 하. (현행 마목부터 파목		(현		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		략)		

다.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3.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	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			
가. ~ 라. (생략)		(생략)		
<신설>				
마. ~ 파. (생략)		(생략)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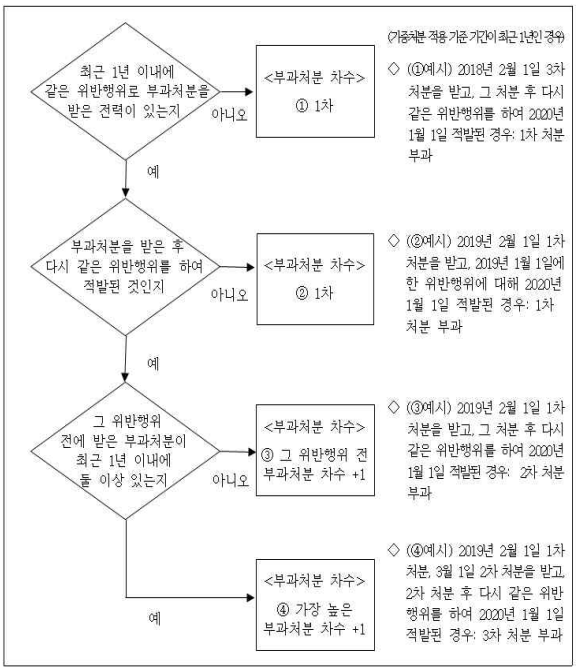
<신 설>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		까지와 같음)		

다.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3.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	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			
가. ~ 라. (생략)		(현행과 같음)		
마.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		경고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
바. ~ 하. (현행 마목부터 파목까지와 같음)		(현행과 같음)		

[별표 3]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

	
[별지 1]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	**[별지 1]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**
제4조 (용어의 정의)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	**제4조 (용어의 정의)** ----------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“투자업체“라 함은 법에 따라 조합에서 투자한 창업자,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.	10. “투자업체“라 함은 법에 따라 조합에서 투자한 창업기업,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.
11. ~ 14. (생 략)	11. ~ 14. (현행과 같음)
15. “회계감사인“이라 함은 조합재산의 운용상황에 대한 감사 및 결산보고 등을 실시하	15. “회계감사인“이라 함은 조합재산의 운용상황에 대한 감사 및 결산보고 등을 실시하

기 위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을 말한다.	기 위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한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.
16. ~ 24. (생 략)	16. ~ 24. (현행과 같음)
25. "창업자"란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.	25. "창업기업"이란 ---------- ----------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---.
26. ~ 28. (생 략)	26. ~ 28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9. "특별조합원"이란 본 규약상 유한책임조합원 중 한국모태펀드를 말한다.
제9조(출자금 구성) 출자자별 출자금 구성은 다음과 같다.	제9조(출자금 구성) ---------- ----------.
(주1) (생 략) **(주2) <신 설 >**	**(주1) (현행과 같음)** **(주2) 유한책임조합원에 집합투자기구, 특정금전신탁, 조합이 있을 경우, 출자금 구성 표안에 출자자 성격 및 출자자수 별도 기재** (예시) OO신탁(특정금전신탁, 출자자수 2인)
제12조 (조합원의 자격) ①·② (생 략) ③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지위의 양도 및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결성시 최초에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은 자 이외에는 새로이 조합	제12조 (조합원의 자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 제20조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조합결성 이후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출자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출자금은 금○○○원(₩○○○)정이내의 금액에 한한다.	----------. ---------- 이후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14조 (조합의 존속기간) ① 조합의 존속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○년으로 한다. 다만,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(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)에 의하여 ○년 연장할 수 있다.	제14조 (조합의 존속기간) 조합의 존속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○○년으로(또는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로) 한다. 다만,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(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)에 의하여 ○년 연장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한	② <삭 제>
제15조 (결성총회) ①·② (생략) ③ 결성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(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)로 하며, 출자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	제15조 (결성총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조합원 전원의 동의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할 수 있다.	--------.
제17조 (유한책임조합원의 탈퇴) ①·② (생 략)	제17조 (유한책임조합원의 탈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업무집행조합원이 탈퇴한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합해산시까지 탈퇴 당시의 출자원금에 해당하는 지분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③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조합청산시---------- 출자금---------- ----------. 청산 시 업무집행조합원은 탈퇴 조합원에게 청산시점의 해당 출자지분 평가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한다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8조 (유한책임조합원의 제명) ① (생 략)	제18조 (유한책임조합원의 제명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명된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은 본 조합 해산시까지 이를 유보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청산시---------- 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1조 (조합원총회) ① (생 략)	제21조 (조합원총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조합원총회는 조합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	② ---------- ----------

다.	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출자금 총액의 증액	6. 출자금 총액의 증액(또는 감액)
<신 설>	7. 조합재산 배분
7.·8. (생 략)	8.·9. (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)
제26조 (조합운영경비) ①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합의 부담으로 한다.	제26조 (조합운영경비) ① -----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	7. 제27조----------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7조 (관리보수) ① 조합은 존속기간 중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관리보수로 지급한다.	제27조 (관리보수) ①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○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산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투자잔액(매분기말 평균	2. ---------- 날로부터 해산(또는 청산)하는 ----------

잔액 또는 일일평균잔액)의 연 ○%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관리보수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분기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,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결산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승인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2분의1의 범위내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.	---------- ---------- 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.
(주1) 제1항제2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가능 2.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○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해산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출자금 총액의 ○%를 기준으로 ○%p씩 차감한 비율을 출자금 총액에 곱한 금액 예) 존속기간 5년 조합의 경우 3년차까지는 2.5%. 4년차 2.0%, 5년차 1.5% 적용 **(주2) (생 략)** **(주3)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추가 가능** ③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투자의무비율을 준수한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창업자,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·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이외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30조제1항각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은 제1항제2호의 투자잔액에 이를 포함한다. **(주4) (생 략)**	**(주1) 제1항제2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가능** 2.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○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해산(또는 청산)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출자금 총액의 ○%를 기준으로 ○%p씩 차감한 비율을 출자금 총액에 곱한 금액 예) 존속기간 5년 조합의 경우 3년차까지는 2.5%. 4년차 2.0%, 5년차 1.5% 적용 **(주2) (현행과 같음)** **(주3)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추가 가능** ③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투자의무비율을 준수한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창업기업,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·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이외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30조제1항각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은 제1항제2호의 투자잔액에 이를 포함한다. **(주4) (현행과 같음)**

제29조 (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의 원칙)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을 조합재산 외의 다른 재산과는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관리·운용하고, 독립회계로서 장부 등의 기록유지 및 시재점검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.	제29조 (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의 원칙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당하는 방법으로 본 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○○%이상을 투자해야 한다.	---------- 등록한 ----------
(주)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인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 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○○%이상을 투자해야 한다.	**(주)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**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인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 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○○%이상을 투자해야 한다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업체와 투자계약을 체결·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⑤ ----------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 본 조합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날 이전에 투자금을 집행하는 행위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제31조 (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및 투자의 방법) ① ~ ③ (생 략)	제31조 (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및 투자의 방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규정 제5조제2항을 준용하여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당시의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의 경우 규정 제8조제1항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목적회사의 투자의무를 달성한 경우에 배분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 얻어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된 후 회수된 출자원금. 이 경우 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”는 “투자목적회사”로 본다.	<단서 삭제> <삭 제>
2.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방법으로 투자된 후 회수된 출자원금	<삭 제>
3. 투자목적회사 설립 후 3년이 지나고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투자하지 않은 출자원금	<삭 제>
⑤ 투자목적회사는 당 회사에	⑤ ----------

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이 해산되기 이전에 청산종결되어야 한다. 이 경우,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목적회사가 청산되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.	---------- 청산되기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.
⑥·⑦ (생 략)	⑥·⑦ (현행과 같음)
제35조 (배분원칙) ① (생 략)	제35조 (배분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벤처투자조합은 영 제34조제1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을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(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)를 얻어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. 다만,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의 경우 제30조제1항 및 그 외 본 규약이 정한 투자의무를 달성한 경우에 배분할 수 있으며, 배분 후 출자원금은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.	② ----------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원금을 ----------. <단서 삭제>
1.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한 후 회수된 출자원금. 이 경우 "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"는	<삭 제>

“벤처투자조합”으로 본다.	
2.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방법으로 투자한 후 회수된 출자원금	<삭 제>
3. 조합 등록 후 3년이 지나고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투자하지 않은 출자원금	<삭 제>
③조합 해산시 현금화되지 못한 유가증권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(또는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)에 따라 현물로 배분할 수 있다.	③-- 청산시 ---------- ---------- 조합원의 동의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(배분)금액 및 시기는 조합원총회의 일반결의 (또는 특별결의)로 달리 정할 수 있다.	④------ 제2항---------- ---------- 조합원의 동의로 정한다
제36조 (손실금 충당) ① (생 략)	제36조 (손실금 충당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손실금의 충당시기는 본 조합이 해산하는 때에 한한다.	② ------- 정한 ---------- ---------- 청산하는 --------.
제40조 (투자유가증권의 평가) ① (생 략)	제40조 (투자유가증권의 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는 공개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 증권의	② ---------- ----------

경우에는 조합의 해산결의 직전일 종가에 의하고, 공개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(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)에 의하여 결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유가증권의 최종적인 평가액으로 확정한다.	------ 조합의 해산(또는 청산)결의----------.
제41조 (회계보고 등)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에 관한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,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 조합원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	제41조 (회계보고 등) ① ----------- 재무상태표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의 감사보고서를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.	③---------- 공시해야 한다.
제48조 (규약의 일부 실효) ① 본 규약의 일부 규정이 근거법령의 개폐 등 기타 사유로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본 규약의 다른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.	<삭 제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의 일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어 본 규약의 실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거법령 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규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.	
제49조·제50조 (생 략)	제48조·제49조 (현행 제49조 및 제50조와 같음)
제51조(규약의 유효기간) 본 규약은 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조합재산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유효하다.	제50조(규약의 유효기간) ---------- 등록말소된 날----------.
제52조 ~ 제54조 (생 략)	제51조 ~ 제53조 (현행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와 같음)
<신 설>	**[별지 2] 이의신청서(제19조 관련)**

	[별지 제2호서식] **이의신청서** 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접수번호: / 접수일: / 처리기간: 15일 신청인: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.) / 생년월일 주소(법인·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.) 전화번호/휴대전화번호 /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대상 처분 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: ※ 이 란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,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 「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15조의2,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**중소벤처기업부장관** 귀하 첨부서류: 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/ 수수료 없음 신청 안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(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제2항).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(신청인) → 접수(중소벤처기업부) → 검토(중소벤처기업부) → 결정(중소벤처기업부) → 결과 통보 210mm× 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[별지 2] (생 략)	[별지 3] (현행 별지 2와 같음)
[별지 3] (생 략)	[별지 4] (현행 별지 3과 같음)
[별지 4] (생 략)	[별지 5] (현행 별지 4와 같음)
[별지 5] (생 략)	[별지 6] (현행 별지 5와 같음)